

인천광역시 남동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452 호

2002 년 5 월 13 일 월요일

차 례

규 칙

○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8호(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
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)----- 3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: 문화홍보실

규	칙
---	---

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

2002 5 13

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8호

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〔별표1〕을 별지와 같게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*****
- 제안이유
-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비보조함에 따라
 -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구의 지원기준과 시의 보조기준을 일치시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- 주요골자
- 담장설거후 평행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70%범위내에서 최고 800천원까지 보조(별표 1)
 - 담장철거후 직각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60% 범위내에서 최고 1,000천원까지 보조(별표1)
 - 대문 철거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55%범위내에서 최고 1,200천원까지 보조(별표1)
 -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 비용의 50% 범위내 최고 1,500천원까지 보조(별표1)
 -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최고 1대당 1,500천원까지 지원(별표1)
- *****

【 별 지 】

[별표 1] 보조금의 지급기준 (제4조 관련)		
구 분		지 원 금 액(원)
담 장 철 거 주 차 시 설 설 치	평 행 주 차	설치비용의 60%범위내 최고 1,000,000원까지 지원
	직 각 주 차	설치비용의 70%범위내 최고 800,000원까지 지원
대 문 철 거 주 차 시 설 설 치		설치비용의 55%범위내 최고 1,200,000원까지 지원
이웃간경계담장철거 후주차시설설치(2면)		설치비용의 50%범위내 최고 1,500,000원까지 지원
기계식주차시설 설치		주차장법관련규정에서 안전도인정검사를 받은경우 최고1대당1,500,000원까지 지원 (2대로인정되는시설은 증가면 추가지원)
《기타》 ○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<u>40만원</u>을 추가로 지원 ○ 현행과 같음		